

제356회 정례회
2017. 6. 9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4.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」 제11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교부금의 전출시기 조정 (안 제15조)

- “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” ⇒ “다음 달 말일까지”

나. 단서 내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수정 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2016. 12. 13.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

-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는 시기를 “2개월마다 다음달 말일” 까지 진출하던 것을 “다음달 말일” 까지로 진출하고,
 - 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(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)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바,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